



종합건강증진센터

Comprehensive Health Promotion Center

보건관리위탁 업무안내





보건관리위탁업무

보건관리전문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보건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지도·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보건관리위탁이란?

자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중,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지도, 조언함으로써 사업장 보건관리수준 향상과 업무상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업무

초기단계 보건관리위탁 업무내용

- 사업장내 위탁업무관리자에게 보건관리위탁사업의 취지와 목적 설명.
- 사업장 보건관리현황 파악 및 관련서류를 검토합니다.
- 작업공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순시합니다.
- 사업장 위생시설 및 복지시설을 파악합니다.
- 사업장관리카드에 보건관리 업무 수행내용을 기록하고 점검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 사업장내 위탁업무관리자에게 설명합니다.
- 매월 보건관리상태, 업무수행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한 보건관리상태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세부 업무내용

보건정보관리

- 근로자 보건관리현황 점검
- 사업장관리카드
- 각종통계작성 및 개선방향 검토
- 보건업무기록 작성 및 보고,관리

작업환경 및 작업관리

- 작업환경관리실태 파악 및 작업장 순회점검
- 작업환경 점검, 평가
- 작업환경측정결과 사후조치
- 유해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도
- 작업방법지도 및 보호구 착용지도

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 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보건교육
-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 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 질병자 및 유소견자 관리
- 건강생활의 실천지도
- 질병예방에 관한 지도
- 영양 및 식생활 지도
- 건강상담을 통한 질병조기발견

근로자 건강관리

- 건강진단관리
- 건강진단 결과 설명
- 직업병 유소견자 관리
- 질병유소견자 관리
- 만성질환자 관리



선택업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목적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참고 : 유해요인 조사의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관련법규 및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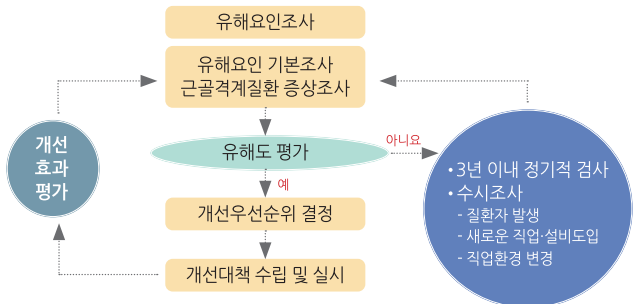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0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0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절차 및 방법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근로자 개인적으로 또는 직장에서 부서 및 회사 전체의 집단적 스트레스 요인 수준을 평가하는 활용되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와 그 사용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 KOSHA GUIDE H-67-2012]

개인 또는 직장 내 부서 및 회사 전체의 집단적 스트레스 요인 측정하는데 활용. 8개항목 (43개 문항)

뇌심혈관계질환 예방관리

작업관련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인자인 생활습관요인, 건강상태 요인 등을 조사하여 향후 뇌·심혈관계질환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및 담당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지침 KOSHA GUIDE H-200-2018]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 1회의 주기로 실시.
-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 수준에 따른 그룹 분류 : 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고위험군, 최고위험군
- 업무 적합성 평가 및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에 따른 사후 관리



선택업무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절차 개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대상 및 주기

- 평가대상: 모든 근로자
- 평가주기
 - 기본주기: 2년 1회
 - 주기단축: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수준에 따라 실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실시

필수항목: 모든 근로자
선택항목: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종합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에 따른 그룹 분류
→ 건강군, 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고위험군

업무적합성 평가

- 현재의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 통상근무
- 생활습관개선, 약물치료 또는 근무시간 제한 등의 노력과 함께 현재의 부서에서 근무: 조건부 근무
- 건강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요양치료가 필요: 병가 또는 휴직
- 현재의 업무특성상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수 있어 다른부서로 직무전화조치 필요: 작업전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따른 사후관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별 차별화된 사후관리
→ 생활습관개선, 질병관리, 근무상조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수수료: 선택사업 수수료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노임단가」준용



자발적 보건관리 업무 위탁 관련 적용지침

(22.7.27.(수) 산업보건기준과)

보건관리 업무 전문분야별 위탁 허용

- 보건관리 업무 전문분야별 위탁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이행했거나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보건관리 서비스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형태로 그간 자발적인 업무 위탁의 경우에도 보건관리 업무 전부 위탁만을 인정하는 행정지도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분야별(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 위탁도 허용

수탁 근로자 수 산정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 관련)

- 사업주가 보건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전문분야별로 위탁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수탁 근로자 수 산정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보건관리자 업무를 전문분야(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별로 수탁할 경우, 업무수탁한계 근로자 수는 1개 분야를 수탁할 때마다 수탁하려는 근로자수를 1/3 가산하여 적용한다.
※ 소수점 이하의 근로자 수는 버리고, 업무수탁한계 사업장의 수는 전문분야별 수탁할 경우라도 그대로 적용한다.

적용시기 : 지침 시달일로부터 적용



보건관리업무 위탁방법

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할지방노동청에서 지정한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준비서류

- 보건관리위탁계약서
- 협약서
- 보건관리위탁업무 안내책자

사업자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산재보험, 건강보험관련자료
- 기타 보건관리 관련자료

계약체결

사업자 산업보건담당자 선정 및 방문일 결정

해당관할노동청 통보



보건관리위탁 업무협의

☎ 문의 :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종합검진센터 산업보건실
042)611-3786~7